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9호 중 “병충해방제기”를 “방제기”로 하며,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농업용 지게차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관리번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판매기록표

구매자			판매물품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종	품목	품명	단가	수량	판매가액	

작성방법

1. 구매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농민, 임업인 또는 어민에 해당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거래당 판매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생년월일·단가·수량란은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업종란에는 공급한 기자재가 사용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4. 품목란에는 다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①비료, ②농약, ③사료, ④유기농어업자재, 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구분
5. 품명란에는 기자재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15일

환급 대상자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구입연월일	품목	수량	금액		
			① 구입가액	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합계 (①+②)
합계					

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임·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였으니
같은 조 제3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급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동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2.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3. 00.>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년 기)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환급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①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구입연월일	품목	수량	금액		
			② 구입가액	③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④ 합계 (②+③)
합 계					
환급금계좌산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3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환급대행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1. 환급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환급신청명세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 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각확인서 또는 조합확인서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